

증평군 공무원 휴양소 운영 규정 [2005. 3. 14]
[훈령 제20호]
일부개정 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평군 공무원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증평군 공무원 휴양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양소”라 함은 증평군 공무원 휴양소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한 민간기업 콘도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 ②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휴양소 내 시설(부속시설 포함)을 사용하기 위해 콘도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③ “성수기”라 함은 여름에는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겨울에는 12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④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주말(연휴포함)과 평일로 구분한다.

제3조(사용대상) 본 시설의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증평군 산하공무원
2. 증평군의회 의원
3. 증평군에서 퇴직한 공무원
4. 기타 군정발전에 공이 있는 자

제4조(사용일수) 본 시설의 사용은 성수기에는 2박, 주말(연휴포함)에는 3박, 평일에는 4박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사용신청) ① 본 시설의 사용신청은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하며, 비수기는 사용 20일전까지, 성수기는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일을 별도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사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사용자 결정결과를 사용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결정) 본 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사용자를 결정하고, 증평군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합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한다.

1. 당해연도에 휴양소 시설을 이미 사용한 자
2.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업체로부터 통보된 자

제7조(사용신청 취소)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늦어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9>

제8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휴양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태만이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2. 12. 29>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훈령 제153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공무 국외여행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 공무원 휴양소 사용신청서				
사 용 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전화번호	事) H)
사용기간	200 . . . ~ 200 . . . (박 일)			
사용콘도	위 치			
	평 수			
사용인원	명			
「증평군 공무원 휴양소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휴양소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급(위) : 성 명 : 서명, 날인 증 평 군 수 귀하				
※ 신청자 유의사항 1. 신청인이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행정과(835-3223)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임의로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illegible]